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년 4월 20일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2월 22일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1년 2월 25일
- 라. 상정일자: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1. 4. 20.)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장유석 자치행정과장)

#### □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구의원 1인 포함)으로 구성(안 제3조)
- 다.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안 제6조제1항)

- 라.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구가 관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또는 구와 민간 기업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 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 재단의 장학 기부금 모금 시 사전검토서를 위원회 심의 시 첨부 (안 제6조제3항)
- 마. 출석회의가 원칙이나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음(안 제7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0.10.28.~2020.11.17.) 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제정 취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나. 주요 내용

### ○ 제정 목적(안 제1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기부심사위원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sup>1) 제5조제2항1호</sup>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으며,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접수가 가능함에 따라 심의 사항을 규정함

※ 기부금품: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 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 ○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심의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임

1)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함

##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심의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와 기부금품을 기탁받아 사용하려는 부서는 일정 서식에 맞춰 제출토록 하고,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 할 때는 심의 요구토록 함.
- 다만, 법제3조<sup>2)</sup>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음.

## ○ 위원회 운영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 위원회 소집과 회의방법, 의결 사항, 간사 선임 등을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함

## ○ 심의회의 시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심의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제출) 가능함을 규정

---

2)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3.>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다.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청탁금지법<sup>3)</sup> 취지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 등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정착 및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강서구 발전과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애정을 갖고 기부금품들을 기탁하려는 기부자들에 대하여 명예와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안 제6조의제3항제2호. 우리구의 경우, 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의 기부금 모금 항목은 실체여부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3)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 된다.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6. 2. 3.>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29.>
- ②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20. 7. 7.>
-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
- ⑥ 시·도 및 시·군·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국가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 심의를 거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